

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(주) 약관 개정

개정일 : 3월 25일 / 시행일 : 4월 30일

대상약관	기초약관	변경 후 약관
월부금용 약관	<p>&lt;별첨1&gt; 자동이체약관</p> <p>4.이체일에 동일한 수준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<b>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</b></p> <p>&lt;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&gt;</p> <p>2. 본 차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수리, 정비 또는 개조, 기타사유물류 부가, 증속될 제 장치, 기계, 기구 등 <b>일체의 부속물건에도</b>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.</p>	<p>&lt;별첨1&gt; 자동이체약관</p> <p>4. 이체일에 동일한 수준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<b>출금우선 순위는 고객과 해당 계좌개설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르겠습니다.</b></p> <p>&lt;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&gt;</p> <p>2. <b>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, 정비, 구조변경 또는 개조,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속물 및 증속에도 미친다.</b></p>
	<p>[제3조] 리스기간</p> <p>1. 리스기간은 갑이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(이하 "리스기간"이라 함)을 가리키며, 리스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. 리스 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차량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간주한다. <b>인수증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.</b></p> <p>[제4조] 차량의 구입, 인수 및 등록</p> <p>5.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차량의 종류, 규격, 기능,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 <b>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.</b></p> <p>[제4조] 차량의 구입, 인수 및 등록</p> <p>7. 만약 갑의 명의로 리스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갑은 등록과 동시에 을을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설정비용은 갑이 부담한다. <b>또한 갑의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면허세는 갑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. 9. 제8항에도 불구하고 "갑"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 등 제비용이 지연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"갑"이 부담하기로 한다.</b></p> <p>[제5조] 리스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</p> <p>2. 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,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차량의 매도시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4. 갑이 차량의 인도지연, 하자 등 사용 또는 점유를 중단하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"을"이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, "갑"은 이를 이유로 리스로 지급채무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.</p> <p>[제11조] 리스차량의 유지, 비용 및 제세공과금</p> <p>4. 리스차량의 구입, 인도, <b>등록</b>, 유지 사용 및 등록말소,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(과태료, 범칙금포함) 갑이 부담한다.</p> <p>[제21조] 반납차량 평가</p> <p>1. "갑"이 본 계약에 의해 리스 차량을 반납한 경우 "을" 또는 "을"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하여 반납차량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여 (별첨"차량평가 및 평가기준" 참조). 평가결과 "을"이 <b>별도로 규정된 평가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"갑"은 "평가금액"을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b></p>	<p>[제3조] 리스기간</p> <p>1. 리스기간은 갑이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(이하 "리스기간"이라 함)을 가리키며, 리스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. 리스 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차량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<b>추정한다. (3분 삭제)</b></p> <p>[제4조] 차량의 구입, 인수 및 등록</p> <p>5.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차량의 종류, 규격, 기능,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 <b>&lt;2분 삭제&gt;</b></p> <p>[제4조] 차량의 구입, 인수 및 등록</p> <p>7. 만약 갑의 명의로 리스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갑은 등록과 동시에 을을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설정비용은 <b>을</b>이 부담한다.</p> <p><b>8. "을"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"을"이 납부하기로 한다. 다만, "갑"이 명의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는, "을"을 "갑"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면허세는 "갑"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.</b></p> <p><b>9. 제8항에도 불구하고 "갑"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 등 제비용이 지연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"갑"이 부담하기로 한다.</b></p> <p>[제5조]</p> <p><b>2. "갑"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b></p> <p><b>4. "갑"은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로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. 다만, "을"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"을"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"갑"에게 리스로를 청구할 수 없다.</b></p> <p><b>5. "을"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"갑"은 제2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, "을"은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"갑"이 지급한 리스로를 정산하기로 한다. 다만,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, 보험료, 범칙금 등 "을"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금액으로 한다.</b></p> <p>[제11조] 리스차량의 유지, 비용 및 제세공과금</p> <p>4. 리스차량의 구입, 인도, <b>(등록 삭제)</b>, 유지 사용 및 등록말소,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(과태료, 범칙금포함) 갑이 부담한다.</p> <p>[제21조] 반납차량 평가</p> <p>1. "갑"이 본 계약에 의해 리스 차량을 반납한 경우 "을" 또는 "을"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하여 반납차량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여 (별첨"차량평가 및 평가기준" 참조). 평가결과 <b>별첨에서 정한 평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"을"이 "갑"에게 동의를 받은 후,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한다.</b></p>
리스약관	<p>&lt;매매발주계약서&gt;</p> <p>[제4조] 물건의 인수</p> <p>차량 인수(성능보전을 위한 시운전 포함)는 을 및 병의 책임하에 모든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, 차량의 인수가 끝나는 즉시 병은 갑이 정하는 차량인수증을 갑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b>단, 차량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차량의 등록된 이상 차량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하며, 병은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.</b></p>	<p>&lt;매매발주계약서&gt;</p> <p>[제4조] 물건의 인수</p> <p>차량 인수(성능보전을 위한 시운전 포함)는 을 및 병의 책임하에 모든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, 차량의 인수가 끝나는 즉시 병은 갑이 정하는 차량인수증을 갑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b>&lt;다시조항 삭제&gt;</b></p>
	<p>[제11조] 리스차량의 유지, 비용 및 제세공과금</p> <p>5. 리스계약 및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,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입, 인도, <b>등록</b>, 유지, 사용 및 등록 말소, 폐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, <b>등록세</b>, 취득세, 공채매입액 및 할인비용, 자동차세, 환경개선부담금,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을 포함한다.</p> <p>[제25조] 지연배상금</p> <p>1. "갑"이 리스로 등 본 계약에 따라 "을"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"을"이 "갑"을 위하여 대당한 비용의 지급을 연체하는 때, "갑"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<b>대납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</b>의 기간동안 위 금액에 대해 리스계약서 기재의 지연 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[제11조] 리스차량의 유지, 비용 및 제세공과금</p> <p>5. 리스계약 및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,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입, 인도, <b>(등록 삭제)</b> 유지, 사용 및 등록 말소, 폐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, <b>(등록세 삭제)</b>, 취득세, 공채매입액 및 할인비용, 자동차세, 환경개선부담금,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을 포함한다.</p> <p>[제25조] 지연배상금]</p> <p>1. "갑"이 리스로 등 본 계약에 따라 "을"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"을"이 "갑"을 위하여 대당한 비용의 지급을 연체하는 때, "갑"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<b>대납 비용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</b>의 기간동안 위 금액에 대해 리스계약서 기재의 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
	<p>[제34조] 변제중단</p> <p>"갑"이 "을"에게 부담하는 채무변제액이 "갑"이 채무 정액을 소멸시킴에 부족한 때에는 "을"이 정하는 바에 따라 <b>변제에 중단하기로 한다.</b></p> <p>[제39조] 관할법원</p> <p>본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"을"의 본점 또는 <b>지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</b>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 <p>[제40조] 해석</p> <p>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"을"의 여신거대본약관 및 본.지점에 비치된 내규, 금융광행에 의하기로 한다.</p>	<p>[제 34조] &lt;삭제&gt;</p> <p>[제39조] &lt;삭제&gt;</p> <p>[제 40조]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대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.</p>
	<p>&lt;별첨2&gt; 자동계좌이체약관</p> <p>7. 제1항의 자동계좌이체일에 귀사 및 다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개의 자동계좌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해당 계좌개설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</p>	<p>별첨1 자동이체약관</p> <p>7. 제1항의 자동계좌이체일에 귀사 및 다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개의 자동계좌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<b>고객과 해당 계좌개설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르겠습니다.</b></p>
	<p>&lt;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&gt;</p> <p>[제12조] 합의관할</p> <p>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, 병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<b>서울지방법원을 관할 법원</b>으로 한다.</p>	<p>&lt;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&gt;</p> <p>[제12조] 합의관할</p> <p>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, 병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<b>법외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"을"의 본점 또는 지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</b>으로 한다.</p>